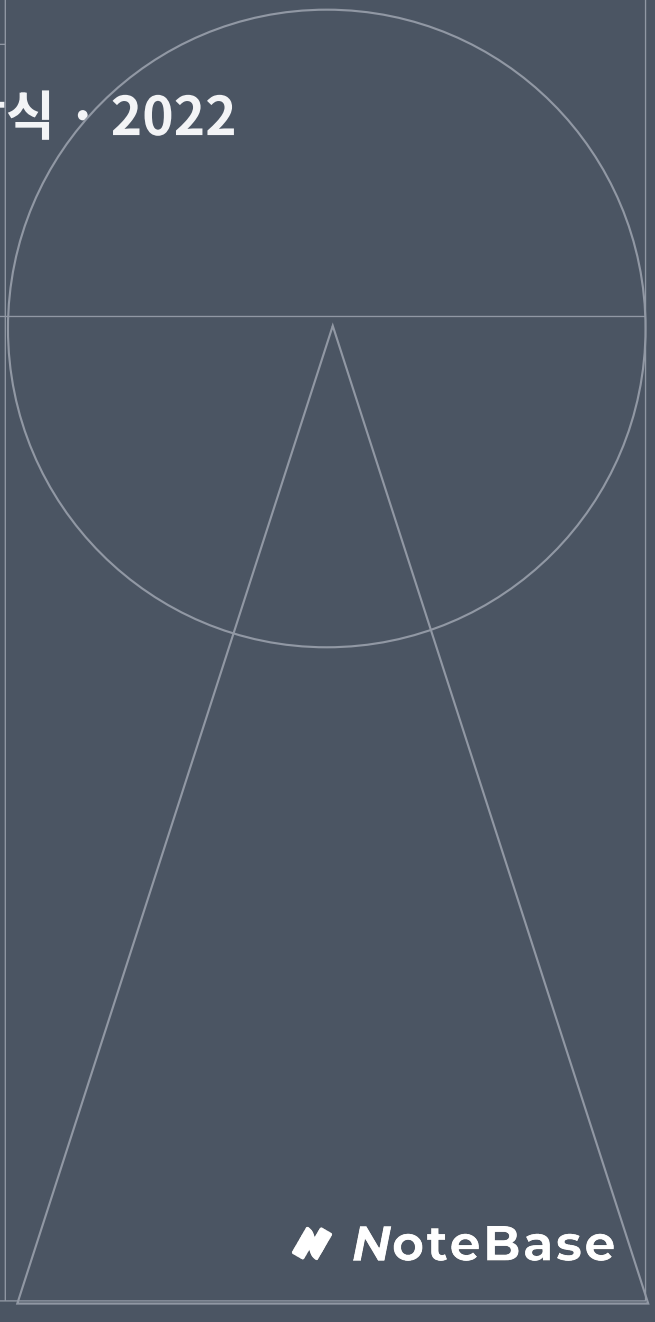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금융상식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금융상식 · 2022

공무원/계리직/9급 · 금융상식 · 2022

문 1.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 주체인 가계 부문에 적절한 자산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시간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킨다.

②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수록 현금 전환 과정에서의 예상 손실 보상액에 해당하는 유동성 프리미엄도 높다.

③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는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④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의 전파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금융시장의 소비 시점 조정, 유동성 프리미엄, 시장 감시, 정보 전달 기능을 구분하고 유동성과 유동성 프리미엄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산 가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시장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유동성은 금융자산을 가치 손실 없이 신속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이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현금화가 어렵거나 그 과정에서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보유하는 데 대해 요구하는 추가 보상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유동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계는 금융시장에서 저축으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차입으로 미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시간선호에 맞게 소비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도 높다'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예상 손실이 작아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작다. 올바르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유동성이 낮은 금융자산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다'이다.
③ O —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발행자의 수익성, 위험, 상환 가능성 등에 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시장참가자는 이러한 가격 신호를 활용해 차입자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규율하는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O —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더 많은 거래와 정보가 가격 형성에 반영되고, 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전달되는 속도도 일반적으로 빨라진다. 이는 금융시장의 정보 생산 및 전달 기능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유동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속성 때문에 프리미엄도 높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유동성 프리미엄은 유동성이 부족한 불편과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이므로 유동성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프리미엄이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현금화의 어려움과 손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면 유동성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프리미엄이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유동성은 쉬운 현금화와 낮은 유동성 프리미엄, 저유동성은 어려운 현금화와 높은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주가지수옵션 매수자의 이익은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손실은 무한정인 반면, 매도자의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정이다.

ㄴ. 풋옵션의 매도자는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ㄷ. 옵션 계약에서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갖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ㄹ. 계약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선물거래에는 헤징(hedging) 기능,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 기여, 장래의 가격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가지수옵션의 손익 구조, 풋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권리·의무, 옵션 프리미엄, 선물거래의 경제적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옵션은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계약이다. 옵션 매수자는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옵션 매도자는 매수자가 행사하면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주가지수 콜옵션 매수자: 최대 손실은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제한되고 이익은 이론상 무한하다.
주가지수 콜옵션 매도자: 최대 이익은 받은 프리미엄으로 제한되고 손실은 이론상 무한하다.
풋옵션 매수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풋옵션 매도자: 매수자의 행사에 따라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에 사야 할 의무를 진다.
선물거래는 계약 조건이 표준화되어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헤징·현물시장 유동성 확대 기여·장래 가격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ㄱ의 '매수자 이익은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손실은 무한, 매도자 손실은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은 서로 뒤바뀐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콜옵션 매수자의 손실과 매도자의 이익이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매수자의 이익과 매도자의 손실은 이론상 무한하다. ㄴ의 '풋옵션의 매도자가 매도할 권리를 가진다'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풋옵션 매수자가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권리를 가지며, 매도자는 행사에 응해 매수할 의무를 진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ㄱ은 콜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 구조를 반대로 서술했다. 올바르게는 매수자의 최대 손실과 매도자의 최대 이익이 프리미엄으로 제한된다. ㄷ은 행사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얻는 옵션 매수자가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급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③ X —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ㄴ의 '풋옵션의 매도자가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풋옵션 매수자가 매도할 권리를 가지고 매도자는 행사 시 매수할 의무를 진다. ㄹ은 표준화된 선물거래가 헤징, 현물시장 유동성 확대 기여, 가격발견을 통한 장래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④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옵션의 선택권을 가진 매수자는 그 권리의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거래소 선물거래는 헤징과 가격발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 포인트

ㄱ은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 한도를 통째로 뒤바꾼 진술이다. ㄴ은 '풋옵션이 매도할 권리'라는 사실만 보고 그 권리의 주체를 매도자로 착각하게 만든다. 옵션의 매수자·매도자는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방향이 아니라 옵션 계약을 매수·매도한 지위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선택권을 가지며,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이행의무를 진다는 기준을 세운다. 그다음 콜은 살 권리, 풋은 팔 권리라는 방향을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ㄱ~ㄹ의 진위를 각각 확정한 뒤 조합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옵션 매수자 = 프리미엄 지급·권리·손실 제한, 옵션 매도자 = 프리미엄 수취·의무. 콜은 살 권리, 풋은 팔 권리이다.

NoteBase

문 3. <보기>에서 증권투자 또는 증권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주의 실질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ㄷ. 우선주와 채권은 회사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없고, 법인이 우선주 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 지급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이자보상배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뜻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면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제적 효과, 옵션부사채의 발행금리, 우선주와 채권의 차이, 이자보상배율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주주에게 추가 주식을 배정하여 주식 수는 늘지만 회사의 실질 재산 자체는 늘지 않는 자본거래이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붙어 있어,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일반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와 채권: 모두 일반적으로 경영 의결권이 없지만, 우선주배당은 이익의 분배이고 채권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ㄷ의 틀린 표현은 '우선주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 지급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우선주배당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채권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O — ㄱ과 ㄹ이 모두 옳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주식 수를 늘리되 회사의 실질 재산을 늘리지 않으며, 이자보상배율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크다.
③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ㄴ의 틀린 표현은 '일반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이며, 올바르게는 유리한 선택권의 가치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일반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ㄷ은 우선주배당금과 달리 채권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ㄴ은 '높은 금리'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은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더 주면 발행회사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선택권 자체가 투자자에게 가치가 있으므로 발행금리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ㄷ은 의결권이 없다는 공통점만 보고 세무·회계상 지급 성격까지 같다고 오인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식 수와 회사의 실질 재산을 먼저 구분하고, 옵션부사채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옵션이 붙으면 표면금리는 낮아진다'고 판단한다. 우선주와 채권은 자본과 부채의 차이에서 배당은 이익분배, 이자는 비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값이 클수록 이자지급능력이 좋고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상증자·주식배당은 주식 수 증가와 실질 재산 불변, CB·BW는 옵션 가치만큼 낮은 금리, 우선주배당은 이익분배·채권이자는 비용, 이자보상배율은 높을수록 안전이다.

NoteBase

문 4. 현행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서 개시된다.

② 피상속인에게 어머니, 배우자, 2명의 자녀, 2명의 손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3.5이다.

③ 친양자입양제도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④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상속의 개시 시점,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 친양자 입양의 효력, 유언증서의 검인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사망과 등록, 선순위와 후순위, 친생가와 양가, 검인이 필요한 유언과 필요하지 않은 유언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법정상속분 = 유언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공동상속인별 몫이다.
친양자 =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고,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양자이다.
유언 검인 =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여 보존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핵심 구분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이 아니다. 직계비속 중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1명 몫의 50%를 가산받는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자필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 따라 검인 대상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며,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때 개시되는 것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시점'
- 올바른 표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② O
- 살아 있는 자녀 2명이 직계비속으로서 선순위가 되므로 어머니는 후순위이고, 손자녀는 자녀보다 촌수가 먼 직계비속이어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상속하며 각 자녀의 몫 1에 50%를 가산한 1.5의 몫을 받는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1.5/(1.5 + 1 + 1) = 1.5/3.5이다.

③ X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 틀린 표현: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한다'

④ X
- 자필증서 유언은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인은 유언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틀린 표현: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자필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나,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거나 배우자와 자녀의 몫을 균등하게 계산하면 틀린다. 먼저 최근친인 살아 있는 자녀를 선순위 직계비속으로 정한 뒤 배우자의 50% 가산분을 반영해야 한다. ④에서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를 모두 검인 대상으로 묶은 '또는'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속 문제는 '사망으로 개시 → 선순위 상속인 확정 → 배우자 공동상속 여부 확인 → 배우자 50% 가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는지, 유언은 공정증서가 검인 예외인지 각각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상속은 사망 즉시, 배우자는 1.5몫, 친양자는 친생가와 원칙적 단절, 공정증서는 검인 제외이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우체국 법인용 체크카드에는 지역화폐카드, Biz플러스 등이 있다.
ㄴ. 우체국 체크카드의 발급대상은 개인카드의 경우 우체국 수시입출식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의 개인이다.
ㄷ.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소액의 신용공여가 부여된 하이브리드형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ㄹ.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의 MMF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 하이브리드형의 결제 구조, 결제계좌의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카드이다.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된 소액신용 한도 안에서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이 문항의 기준에서 개인 우체국 체크카드는 우체국 수시입출식통장을 가진 만 12세 이상 개인이 발급 대상이며,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의 MMF는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이 틀렸으므로 ㄱ, ㄴ의 조합은 옳지 않다. 지역화폐카드와 Biz플러스는 우체국 법인용 체크카드의 예가 아니다. ㄱ을 제외하고 ㄷ을 넣은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② X — ㄱ과 ㄹ이 모두 틀렸다. 법인용 카드의 예로 지역화폐카드와 Biz플러스를 드는 것은 잘못이며,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의 MMF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이 문항의 기준에서 개인은 우체국 수시입출식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고, 신용등급에 따라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하이브리드형 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MMF가 아니라 우체국의 수시입출식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ㄹ을 ㄴ으로 바꾼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의 '신용공여'라는 표현 때문에 체크카드의 본질과 모순된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이브리드형은 예금 잔액 결제와 소액신용 결제를 결합한 카드이다. 또한 MMF는 수시로 자금을 넣고 뺄 수 있어도 우체국 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되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계좌와는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을 상품 구분, 발급 대상, 결제 방식, 결제계좌의 네 기준으로 나눈다. 하이브리드형의 소액신용 기능은 인정하고, 외부 금융회사의 MMF를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할 수 있다는 문장은 배제한다. 그런 다음 참인 문장만 묶은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개인 발급은 우체국 수시입출식통장, 하이브리드는 소액신용, MMF 결제계좌는 불가이다.

NoteBase

문 6. 우체국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05년부터 우편저금, 우편환과 우편보험을 실시하였다.

② 1982년 12월 제정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83년 1월부터 금융사업이 재개되었다.

③ 우체국의 금융업무에는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주택청약저축, 신탁, 펀드판매 등이 있다.

④ 우체국예금의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와 채권의 발행 등을 통한 차입부채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금융의 도입·재개 시기와 실제 업무 범위, 자금 조달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금융은 국가가 우체국망을 통해 제공하는 예금·보험 중심의 보편적 금융서비스이다. 우편환과 우편저금은 1905년에 시작되었지만 보험은 그보다 뒤에 시작되었고, 1977년 업무 이관 후 1983년에 다시 시행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1905년부터 우편저금, 우편환과 우편보험을 실시하였다'이다. 1905년에 처음 시행된 것은 우편저금과 우편환이며, 보험사업은 1929년에 시작되었다. 올바르게는 '1905년부터 우편저금과 우편환을 실시하였고, 보험사업은 1929년부터 실시하였다'이다.

② O
1982년 12월 관련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1983년 1월 체신예금이 다시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되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우체국 금융업무에 '신탁'이 포함된다고 한 부분이다. 우체국금융은 예금과 보험을 중심으로 주택청약저축 취급 및 펀드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탁업을 직접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의 금융업무에는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주택청약저축 취급, 펀드 판매 등이 있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우체국예금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부채를 조달한다고 한 부분이다. 고객이 맡긴 예금은 상환해야 할 예수부채이지만, 우체국예금은 일반 은행처럼 자체 채권 발행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예금의 주된 조달자금은 고객이 맡긴 예금에 따른 예수부채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우편저금·우편환의 시작 연도와 보험의 시작 연도를 하나로 묶은 함정이다. ③은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상품과 우체국이 직접 영위하는 신탁업을 섞었고, ④는 일반 은행의 자금 조달 설명을 우체국예금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혁 선지는 예금·환·보험의 시작 시점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고, 업무 범위 선지는 '직접 영위하는 업무'와 '판매·취급하는 상품'을 구분한다. 자금 조달 선지는 일반 은행의 설명을 우체국예금에 그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1905년 우편환·우편저금, 1929년 보험 시작, 1983년 우체국금융 재개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

ㄴ. 이웃사랑정기예금: 사회 소외계층과 사랑나눔 실천자 및 읍·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

ㄷ.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만 50세 이상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이율 및 세무, 보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ㄹ. 우체국 다드림적금: 주거래 고객 확보 및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각종 이체 실적 보유 고객,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장기거래 등 주거래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 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예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의 명칭과 가입 대상·목적·우대 방식을 정확히 연결하고, 옳은 설명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ㄱ은 X이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상품은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이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므로 상품명이 잘못되었다.
ㄴ은 O이다.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사회 소외계층과 사랑나눔 실천자 및 읍·면 지역 농어촌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ㄷ은 X이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이 전자금융으로 가입하고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재예치, 만기 자동해지 등 편리한 목돈 관리 기능을 이용하는 디지털 정기예금이다. '만 50세 이상 중년층 대상'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ㄹ은 O이다. 우체국 다드림적금은 주거래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이체, 우수고객, 장기거래 등 우체국예금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 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설명이 1개라는 판단은 틀리다. ㄴ과 ㄹ이 옳으므로 '1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ㄴ과 ㄹ이 옳고 ㄱ과 ㄷ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은 정확히 2개이다.
③ X — 옳은 설명이 3개라는 판단은 틀리다. ㄱ은 희망지킴이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의 대상을 바꾸었고, ㄷ은 편리한 e정기예금의 가입 대상과 서비스를 잘못 설명했으므로 '3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 옳은 설명이 4개라는 판단은 틀리다. ㄱ과 ㄷ이 틀리므로 '4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희망'과 '행복'처럼 이름이 비슷한 압류방지 통장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ㄷ의 '만 50세 이상'만 보고 중년층 특화 정기예금으로 오인하면 편리한 e정기예금의 디지털 목돈 관리 기능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과 핵심 대상을 먼저 짝지어 판단한다. 행복지킴이는 각종 복지급여, 희망지킴이는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수급권 보호와 연결하고, 편리한 e정기예금은 연령보다 전자금융·목돈 관리 기능, 다드림적금은 주거래·장기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 혜택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행복은 복지급여 보호, 희망은 산재급여 보호, 편리한 e는 디지털 목돈 관리, 다드림은 주거래 실적 우대이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옳은 것은?

> (____)은/는 우체국 특화서비스인 우편환기반 경조금 송금서비스와 핀테크를 접목시킨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예금 모바일뱅킹 서비스 앱이다.

① 수신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경조금 및 경조카드를 보낼 수 있다.
② 전체 메뉴를 영어모드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SWIFT, 국제환 서비스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④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의 앱이 PostPay임을 파악하고, PostPay의 생활밀착형 간편송금·결제 기능과 일반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PostPay는 우편환 기반 경조금 송금에 핀테크를 결합한 우체국예금의 간편결제·간편송금 앱이다. 핵심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경조송금과 간편송금, 경조카드 전송 등이며, SWIFT 해외송금이나 전자문서지갑 같은 일반 우체국 금융서비스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PostPay의 경조송금은 수신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번호로 경조금을 보내고 경조카드를 함께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전체 메뉴를 영어모드로 전환'이다. PostPay의 주요 서비스는 경조송금·간편송금·간편결제 등이며, 올바르게는 PostPay가 전체 메뉴를 영어 모드로 바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 틀린 표현은 'PostPay의 SWIFT·국제환 서비스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SWIFT 등 외화송금은 우체국예금의 외환서비스에 해당하며, 올바르게는 PostPay의 주요 기능은 국내 생활밀착형 간편송금·결제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PostPay가 증명서 신청·발급 등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전자문서지갑은 우체국의 다른 디지털 금융 기능에 해당하며, 올바르게는 PostPay의 핵심 기능은 경조송금·간편송금·간편결제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우체국 금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PostPay 자체 기능처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PostPay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같은 범위로 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우편환 기반 경조금 송금'과 '핀테크를 접목한 간편결제·간편송금'이 함께 나오면 PostPay를 떠올린다. 그다음 휴대전화번호 송금·경조카드처럼 생활밀착형 송금 기능인지, 외환·전자문서처럼 별도의 우체국 금융 기능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PostPay는 휴대전화번호로 간편송금, 경조금과 경조카드 전송이다.

NoteBase

문 9. 금융실명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부서 근무직원이라도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이나 보험모집인 등 업무 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확인을 하되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하다.

④ 재예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계좌 개설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 중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실명거래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의 확인서류, 재예치 계좌의 실명확인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재예치도 새 계좌를 개설하는 거래이므로 기존 계좌의 실명확인 자료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실명확인 =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증표의 사진 등을 대조하여 명의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재예치 = 만기가 된 자금을 다시 예치하면서 별도의 새 계좌를 개설하는 거래이다.

핵심 구분

실명이 확인된 기존 계좌에서 입출금·해지·이체 등을 하는 계속거래와 새 계좌를 만드는 재예치는 다르다. 재예치 계좌는 계좌개설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징구하여 보관 중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시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인한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부서 직원은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자가 아니지만,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받은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② O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권한 있는 임직원이 담당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보험모집인 등 업무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③ O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본인·대리 관계와 위임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④ X
재예치는 새 계좌를 개설하는 거래이므로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계좌 개설 때 징구하여 보관한 사본은 재사용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보관 중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재예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기존에 징구한 사본은 재사용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재예치를 기존 계좌의 단순한 계속거래로 보는 데 있다. 재예치는 별도의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거래이므로 과거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현재의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거래가 기존 실명확인 계좌의 계속거래인지 새 계좌의 개설인지 구분한다. 입출금·해지·이체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만 신규·재예치는 계좌개설에 해당하므로 매번 실명확인증표 원본 확인과 관련 서류의 새 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규·재예치 = 새 계좌 = 원본 재확인, 기징구 사본 재사용 금지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ㄷ.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것이다.

ㄹ.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담당 기관,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고액현금거래보고와 의심거래보고의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용어 풀이

고객확인제도(CDD)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 보고하는 제도이다.
의심거래보고(STR)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보고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ㄱ X: 의심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다.
ㄴ X: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가 확인하지 못하는 실제소유자와 거래 목적 등을 보완하지만, 도입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ㄷ O: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객관적 사실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된다.
ㄹ O: 공식 채점에서는 의심거래 의무보고 기준금액이 2010년 6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 뒤 2013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전체 취지를 옳게 보아 ㄹ을 O로 처리한다. 다만 날짜를 엄밀히 구분하면 2013년 8월 13일은 개정법 공포일이고, 기준금액 폐지 규정의 실제 시행일은 2013년 11월 14일이다. 근거가 되는 핵심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의무 규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ㄱ과 ㄴ을 옳다고 묶은 'ㄱ, ㄴ'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ㄷ, ㄹ이다.

② X
ㄹ은 옳지만 ㄱ의 담당 기관이 잘못되었다. 금융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이다.
틀린 표현: 틀린 ㄱ을 포함한 'ㄱ, ㄹ'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ㄷ, ㄹ이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은 고객확인제도의 도입 법률을 금융실명법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다.
틀린 표현: 틀린 ㄴ을 포함한 'ㄴ, ㄷ'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ㄷ, ㄹ이다.

④ O
ㄷ은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인 현금 입·출금의 자동 보고를 정확히 설명하고, ㄹ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와 폐지 및 그에 따른 보고 증가를 설명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정보 수집·분석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을 바꾸어 놓았고, ㄴ에서는 고객확인제도가 금융실명제를 보완한다는 사실에 기대어 근거 법률까지 금융실명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CTR의 1천만원 기준과 STR의 무기준 보고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관의 역할을 구분한 뒤 제도별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KoFIU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CDD는 고객과 실제소유자 및 거래 목적을 확인하며, CTR은 금액 기준에 따른 자동 보고이고, STR은 의심의 합당한 근거에 따른 보고이다.

암기 포인트

KoFIU는 분석, CDD는 고객확인, CTR은 1천만원 현금 자동보고, STR은 의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고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1인 또는 다수 모두 가능하다.
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ㄷ.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생존보험금 발생 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다.
ㄹ.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계약 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와 보험중개사의 지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을 구분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수익자와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피보험자 = 생존·사망 등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사람이다.
보험중개사 =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핵심 구분

현행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이고,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다. 보험업법 제2조는 보험중개사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46조의2가 정한 보험대리상의 계약 관련 권한은 보험중개사에게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예정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1인 또는 다수가 될 수 있다.
- ㄴ은 틀리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타인의 생명보험'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그 이익을 위해 체결하는 보험이다.
- 틀린 표현: '타인을 위한 보험'
- 올바른 표현: '타인의 생명보험'

② O
- ㄱ과 ㄹ이 모두 옳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한 명 또는 여러 명일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독립된 중개자이므로 보험계약 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③ X
- ㄴ은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을 바꾸어 쓴 점이 틀리다.
- ㄷ도 틀리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생존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이다.
- 틀린 표현: ㄴ의 '타인을 위한 보험', ㄷ의 '피보험자'
- 올바른 표현: ㄴ은 '타인의 생명보험', ㄷ은 '보험계약자'이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생존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이다.
- 틀린 표현: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다'
- 올바른 표현: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구별 기준이 다르다. 또한 ㄷ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와 생존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독립된 보험중개사에게도 있다고 보는 것도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나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구조이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판단한다. 수익자 미지정 문제에서는 생존보험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구분한다. 보험모집 종사자의 권한은 독립적 중개인지 보험자를 위한 대리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계약자≠피보험자: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수익자: 타인을 위한 보험, 수익자 미지정 생존보험금: 계약자, 보험중개사: 독립 중개자이다.

NoteBase

문 12.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 사용된다.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순보험료, 운용수익 및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 주체, 운용 방법, 법적 근거와 조성 재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체국보험사업 전반의 근거 법률과 적립금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려고 세입·세출 외에 따로 두는 적립금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전반을 규율하지만,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운용·관리를 직접 정하는 법률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다. 같은 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순보험료·적립금 운용수익금·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조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적립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고 정한다.

② O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은 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적립금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에 사용된다.

③ X
적립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법률을 잘못 제시하였다.
틀린 표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올바른 표현: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④ O
적립금은 순보험료, 적립금 운용수익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조성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우체국보험사업의 일반 근거 법률과 적립금의 직접 근거 법률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법률 이름이 모두 우체국보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적립금 문항에서는 먼저 직접 규율 법률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떠올리고, 관리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용 방법에는 보험계약자 대출, 조성 재원에는 순보험료·운용수익금·결산잉여금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보험적립금은 '특별회계법·과기정통부장관·계약자 대출·순보험료·운용수익·결산잉여금'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3. <보기>에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

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ㄷ.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250만 원 이하

ㄹ.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한 계약기간, 납입기간, 월 보험료 한도 및 납입 방식 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요건의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구별한 뒤 옳은 보기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이익이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된다.

핵심 구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하며 최초 계약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도 균등납입에 포함된다.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1명당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 판단

ㄱ O — 최초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이어야 하므로 옳다.

ㄴ O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ㄷ X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월 납입보험료 합계 한도는 계약자 1명당 150만원이다.

틀린 표현: 250만원 이하

올바른 표현: 150만원 이하

ㄹ O —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하고, 최초 계약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은 허용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옳다.

선택지 판단

① X —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의 3개이므로 '1개'는 틀리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3개

② X — 옳은 보기는 3개이므로 '2개'는 틀리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3개

③ O — 옳은 보기 ㄱ, ㄴ, ㄹ을 세면 3개이므로 맞다.

④ X — ㄷ이 틀렸으므로 '4개'는 틀리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3개

오답 포인트

ㄷ의 '250만원'을 익숙한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함정이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의 월 납입보험료 합계 한도는 150만원이며, 이 한도는 보험계약별이 아니라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계약 유지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균등납입과 선납 6개월 이내의 순서로 확인한다. 각 보기를 O/X로 판정한 다음 O의 개수를 선택지와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월적립식 비과세는 '10년 유지·5년 납입·월 150만원·선납 6개월'이다.

NoteBase

문 14. 우체국 보험상품별 보장개시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당뇨안심보험 2109의 당뇨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②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③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의 피보험자 나이가 10세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④ 무배당 우체국요양보험 2109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 보험상품별 보장개시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상품마다 정해진 대기기간과 나이·발생원인에 따른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장개시일은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시작하는 날이다. 부활일은 보험료 연체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는 날이다.

핵심 구분

무배당 우체국당뇨안심보험 2109의 당뇨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에서 질병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도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암보장은 일반적으로 90일의 대기기간이 있지만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면 계약일 또는 부활일에 바로 개시된다. 장기요양상태는 원칙적으로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하지만,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면 계약일 또는 부활일에 바로 개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당뇨보장개시일까지의 대기기간은 180일이 아니라 1년이다.
틀린 표현: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올바른 표현: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② O
질병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옳다.

③ X
피보험자가 10세이면 15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90일의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틀린 표현: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올바른 표현: 피보험자가 10세인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일

④ X
질병 등 일반적인 원인에는 180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되지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틀린 표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올바른 표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일

오답 포인트

③의 '10세'와 ④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은 대기기간을 없애는 예외 조건이다. 모든 암보장에 90일, 모든 장기요양보장에 180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틀린다. 또한 ①의 당뇨 대기기간 1년을 180일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품별 기본 대기기간을 확인한 뒤 피보험자 나이와 사고 원인을 본다. 암은 15세 미만인지, 장기요양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하면 즉시 보장 예외를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당뇨 1년, 질병성 치매 1년, 15세 미만 암은 즉시, 재해성 장기요양도 즉시이다.

NoteBase

문 15. 우체국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는 기본보험료가 일시납일 경우에는 납입한도액이 없다.

②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는 장애인전용연금보험으로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③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④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연금보험상품별 납입 한도, 연금개시나이, 세액공제 여부, 추가납입 가능 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약을 우체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상품이다.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는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이며 연금개시는 20세부터 가능하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는 연금비적격 상품이므로 납입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무배당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2109는 기본보험료를 일시납입하는 경우 납입한도액이 없으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55세부터'이다.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는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이지만, 연금수령은 20세부터 가능하다.
③ X — 틀린 부분은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의 납입보험료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 상품은 연금비적격 상품이므로 납입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에 적용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이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의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장애인전용이라는 특징을 55세 연금개시와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③은 이름이 비슷한 ‘우체국연금보험’과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을 바꾸어 놓았고, ④는 추가납입 종료 시점을 연금개시 시점보다 1년 늦게 제시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다음으로 연금개시나이와 추가납입 종료 시점의 숫자를 따로 대조한다. 이전형의 일시납 한도, 어깨동무의 20세, 추가납입의 ‘연금개시나이-1세’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전형 일시납은 한도 없음, 어깨동무는 20세부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1년 전까지이다.

NoteBase

문 16.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이며, 종신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②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0세부터 60세까지이며,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③ 갱신 직전 '무사고 할인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갱신일부터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④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의 갱신보험료는 갱신 직전 '요율상대도 판정기간' 동안의 비급여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영업보험료에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의 가입 범위, 보장내용 변경주기, 무사고 할인율,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상품은 실제 발생한 급여 의료비를 약관의 범위에서 보장하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이다.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0세부터 60세까지이고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이며 종신까지 재가입할 수 있다. 무사고 계약의 할인율은 10%이고, 비급여특약의 할인·할증요율은 영업보험료가 아니라 순보험료에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이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이며, 종신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② O —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0세부터 60세까지이며,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도 가입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보험료의 5%를 할인'이다. 갱신 또는 재가입 직전 무사고 할인판정기간 동안 할인 판단에서 제외되는 보험금을 빼고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계약에는 갱신일 또는 재가입일부터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영업보험료에 할인·할증요율을 적용'이다. 갱신 직전 요율상대도 판정기간의 비급여특약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특약의 순보험료 총액에 요율 상대도인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3년과 ③의 5%처럼 숫자를 바꾸거나, ④에서 요율의 적용 대상을 순보험료에서 영업보험료로 바꾼 표현이 함정이다. ②는 가입나이 0~60세와 태아 가입 기준인 임신 23주 이내가 모두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 문제에서는 가입나이·태아 가입 기준, 보장내용 변경주기, 할인율, 할인·할증 적용 보험료를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0~60세·임신 23주 이내', '5년', '10%', '순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가입은 0~60세·태아 23주 이내, 변경주기는 5년, 무사고 할인은 10%, 비급여 차등은 순보험료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에서 우체국보험 청약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보험계약자가 성인인 계약에 한해서 태블릿청약 이용이 가능하다.

ㄴ. 타인계약 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다.

ㄷ. 전자청약과 태블릿청약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시 0.5%의 할인이 적용된다.

ㄹ. 전자청약은 가입설계서를 발행한 계약으로 전자청약 전환을 신청한 계약에 한하며,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비영업일 제외) 이내에만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의 전자청약과 태블릿청약에 관한 이용 대상, 보험료 할인, 청약 가능 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성인 요건, 전자청약 제외 계약, 제2회 이후 보험료 할인, 10일 계산에서 비영업일의 포함 여부이다.

용어 풀이

전자청약은 보험모집자와 상담하여 설계한 내용을 고객이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여 청약하는 방식이다. 태블릿청약은 모집자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전자서명과 고지사항 입력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현행 우체국보험 청약서비스 기준상 태블릿청약은 보험계약자가 성인인 계약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전자청약은 타인계약이나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계약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전자청약과 태블릿청약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0.5% 할인이 적용된다. 전자청약은 가입설계서를 발행하고 전자청약 전환을 신청한 계약에 대하여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10일에는 비영업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고, ㄴ과 ㄹ이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ㄷ은 모두 옳다. 태블릿청약은 보험계약자가 성인인 계약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전자청약과 태블릿청약은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시 0.5% 할인이 적용된다.

② X

ㄱ은 옳지만 ㄹ의 '비영업일 제외'가 틀리다.
틀린 표현: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비영업일 제외) 이내
올바른 표현: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비영업일 포함) 이내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과 ㄷ이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의 '타인계약 또는 미성년자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다'가 틀리다.
틀린 표현: 타인계약 또는 미성년자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타인계약 또는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전자청약이 불가하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과 ㄷ이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타인계약 또는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전자청약이 불가하고, 전자청약 가능 기간인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에는 비영업일도 포함된다.
틀린 표현: 타인계약·미성년자 계약도 가능하며, 10일에서 비영업일을 제외한다.
올바른 표현: 타인계약·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불가하며, 10일에는 비영업일을 포함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과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ㄴ은 전자적 방식이면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ㄹ은 '10일'만 맞게 제시한 뒤 비영업일을 제외한다고 바꾼 함정이다. 이용 대상의 제한과 기간 계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청약서비스 문제에서는 먼저 이용 가능한 계약자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할인 적용 시점과 비율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기간에 영업일 또는 비영업일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성인’, ‘제2회 이후 자동이체 0.5%’, ‘10일에 비영업일 포함’을 기준으로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태블릿은 성인 계약자, 전자·태블릿은 제2회부터 0.5%, 전자청약 10일은 비영업일 포함이다.

NoteBase

문 18.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상태의 유효 또는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②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③ 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연금보험 1종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④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2109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내에서 1천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의 대출 자격, 상품 유형별 대출 한도, 대출 금액 단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와 저축성·연금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한도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환급금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보험 공식 환급금대출 안내에 따르면 대출 자격은 유효한 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에게 있다. 저축성 및 연금보험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보장성보험·즉시연금보험·우체국연금보험 1종은 최대 85%까지 대출할 수 있다. 최저 대출금액은 1만원이며 1만원 단위로 취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유효한 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만 환급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효된 계약까지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계약상태의 유효 또는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유효한 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대출받을 수 있다.

② X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저축성보험이므로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할 수 있다. 1만원 단위라는 부분은 맞지만 최대 80%라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해약환급금의 최대 80% 이내
올바른 표현: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내

③ O
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연금보험 1종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대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최대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85%이고, 대출은 1만원 단위로 취급한다. 95%와 1천 원 단위라는 두 부분이 모두 틀리다.
틀린 표현: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내에서 1천 원 단위
올바른 표현: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1만원 단위

오답 포인트

②의 80%, ③의 85%, ④의 95%를 상품 유형과 분리해 외우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④는 저축성보험의 95%를 보장성보험에 잘못 붙이고, 대출 단위도 1만원이 아닌 1천 원으로 바꾼 복합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상품을 저축성·연금보험과 보장성·즉시연금·우체국연금보험 1종으로 분류한다. 그다음 각각 95%와 85%를 대응시키고, 최저금액과 대출 단위가 모두 1만원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유효계약만 가능, 저축·연금 95%, 보장·즉시연금·연금 1종 85%, 금액은 1만원부터 1만원 단위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에서 우체국보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보험료의 납입기간에 따라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으로 분류된다.
ㄴ.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은 유지 중인 계약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자 본인에게만 신청·변경 권한이 있다.
ㄷ.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자동이체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계약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ㄹ.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보험료의 납입기간, 자동이체,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 자동대출납입의 처리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ㄱ부터 ㄹ까지 각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문장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전기납은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고, 단기납은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서 즉시 보험료를 출금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될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환급금대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보험에서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전기납과 단기납으로 분류하며, 일시납은 보험료의 납입주기에 속한다. 자동이체의 신청·변경 권한은 보험계약자 본인만이 아니라 출금계좌의 예금주 본인에게 있다.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자동이체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상태인 계약에 가능하다.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ㄱ은 X, ㄴ은 X, ㄷ은 O, ㄹ은 X로 옳은 것은 1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ㄷ만 옳으므로 옳은 문장은 1개이다. 계속보험료 실시간이체는 자동이체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고, 계약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② X
- 옳은 문장이 2개라는 판단은 틀리다. ㄱ은 납입기간의 분류에 일시납을 포함한 점이 틀리고, ㄴ은 신청·변경 권한자를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한정한 점이 틀리며, ㄹ은 1년 뒤 자동 연장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틀린 표현: 2개
- 올바른 표현: 1개

③ X
- ㄱ, ㄴ, ㄹ이 모두 틀리고 ㄷ만 옳으므로 옳은 문장이 3개가 될 수 없다.
- 틀린 표현: 3개
- 올바른 표현: 1개

④ X
- 네 문장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다. ㄱ의 올바른 표현은 ‘납입기간에 따라 전기납과 단기납으로 분류된다’이고, ㄴ의 올바른 표현은 ‘출금계좌 예금주 본인에게 신청·변경 권한이 있다’이며, ㄹ의 올바른 표현은 ‘1년 이후에는 재신청해야 한다’이다.
- 틀린 표현: 4개
- 올바른 표현: 1개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혼동하기 쉽고, 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출금계좌 예금주를 혼동하기 쉽다. 또한 ㄹ의 ‘자동 연장’은 함정 표현이다. 1년 이후에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수를 묻는 문항은 각 문장을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의 수를 센다. 납입기간과 납입주기, 보험계약자와 예금주, 자동 연장과 재신청처럼 주체·분류·절차를 바꾸어 놓은 표현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납입기간은 전기납·단기납, 실시간이체는 약정 무관·정상 계약, 자동대출납입은 1년 후 재신청이다.

NoteBase

문 20.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자, 청약철회 기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기간, 보험증권 교부의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이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핵심 구분

상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은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장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올바른 표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② X
보장성 상품의 일반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올바른 표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③ X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권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올바른 표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④ O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상 보험증권 교부의무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30일'은 15일과 30일의 기준점을 섞은 표현이다. ③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의 3년 기간을 2년으로 바꾸었고, ①은 고지의무자에 보험수익자를 끼워 넣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계약 선지는 먼저 주체와 기간을 분리하여 확인한다.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 15일과 청약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계약일부터 3년, 보험증권 교부는 계약 성립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지는 계약자·피보험자, 철회는 15일·30일 중 먼저, 고지위반 해지는 1개월·3년, 증권은 보험료 납부 후 지체 없이 교부한다.

NoteBase